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8635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863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가단52803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화

담당변호사 김효언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필

변론 종결 2021. 12. 22.

판결 선고 2022. 1.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가단52803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8. 체결된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일부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 법원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C의 무자력에 관한 자백의 취소)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C는 2018. 6. 28.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위 채권 외에도 C 소유 시가
2,937,653,400원 상당의 순천시 M 토지 및 지상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심 2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C의 무자력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재판상 자백으로서 법원도 이에 기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은 소외 D이 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C의 적극재산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설사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으로서 위 모텔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였다 하더라도, 위 모텔에 대한 경매사건(광주지방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 갑 제10 내지 20호증 각 기재 참조)에 채권신고된 내역을 합산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모텔의 가액을 초과하고, C는 D에 대하여 위 모텔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까지 부담하는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수경

판사김우현

판사허일승

별지